사업타당성조사 지원 FAQ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총괄부

아래의 FAQ는 2022. 9. 30일 현재 작성된 것이며, 향후 제도운영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지원신청 당시 발표된 최신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1]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제도의 주요 취지는 무엇입니까?

- 수은의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제도는, ❶초기 매몰비용부담 완화로 국내기업들의 해외사업개발 및 수주(사업권 확보)를 조기 지원하고, ❷컨소시엄 유도로 국내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자본금 출자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, ❸ 국내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, ❶국내기업이 이미 사업권을 확보하였거나, ❷이미 사업타당성이 검토되어 입찰참여 준비를 위한 비용 등은 초기 사업개발 지원이라는 당행의 지원 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, 지원대상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
[2] 수은 고객기업의 상세요건은 무엇입니까?

- 지원대상사업은 당행 고객기업 또는 고객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*이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입니다. 컨소시엄의 경우, 대표사가 신청합니다.

  * 컨소시엄 대표사가 반드시 고객기업일 필요는 없으나, 컨소시엄 내 고객기업 참여는 필수 요건입니다.

- **고객기업**은 신청일 기준 당행 여신승인액 또는 여신잔액을 보유한 **국내기업**으로 정의하고 있어, **외국기업은 지원신청이 불가**합니다.
- 지원대상사업이 **해외투자개발형 사업**이므로, **단순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EPC기업**은 **지원신청이 어렵습니다.**
- **자회사 등을 통해 당행과 간접적으로 금융거래**를 하거나, **당행 지원 PF사업에 SPC 출자 등으로 참여**하는 경우에도 **고객기업에 해당**됩니다.
- **이행성보증 거래 기업도** 여신승인액 또는 여신잔액을 보유한 경우 **고객기업에 해당**합니다.

[3] '해외투자개발형사업'이란 무엇입니까?

■ 현행 제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'해외투자개발형사업'이란,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수반하여 수주를 추진하는 해외사업을 말합니다.

'**해외직접투자**'란,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,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**투자비율(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)이 통상 10% 이상인 투자**를 말합니다.

'**수주**'란 **사업권을 주는 주체 (통상 '발주처'를 의미)가 있는 사업**으로, 사업운영을 통한 **운영수익을 확보**할 수 있는 사업(경제성 있는 사업)을 의미합니다. 사업권을 부여하는 주체는 해당국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합니다. 다만, **발전사업**의 경우, **머천트(Merchant) 사업은 예외적으로 지원신청이 가능**합니다.

■ **부동산개발/분양사업 및 자원개발사업(탐사/단순 사업권 인수)**은 발주처가 없어 수주의 개념이 부재하고 경쟁이 없으므로, 당행의 F/S 지원을 통해 수주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당행의 제도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일반적으로 금융지원가시성(Bankability)이 낮아 당행 금융지원 연계가능성도 낮은바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
[4] 입찰형 사업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까?

■ 사업유형에 따른 제약은 없으며, **제안형과 입찰형 사업 모두 지원신청이 가능**합니다. 다만, 입찰형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검토 또는 입찰참여 여부 검토를 위한 목적의 사업타당성조사만 지원 가능하며, **입찰비용*은 지원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

* 입찰제안서 작성 비용, Due Dilligence 성격의 법률, 재무 등 컨설팅 비용 등

■ 입찰참여에 따른 제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, 초기 매몰비용 완화를 통한 해외사업발굴 및 수주 기회 확대라는 당행의 제도 취지 및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

■ **입찰형 사업**으로 지원신청하는 경우, 반드시 **입찰 일정**에 대한 **근거서류**를 **제출**하시기 바랍니다. ❶**사업제안서상 입찰(예정)시기가 F/S 용역 완료 이전인 경우는 입찰비용으로 간주**하며, ❷**F/S 용역수행 중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, 기지원 비용 전액을 환수조치** 예정입니다.

* F/S 용역수행기간 중 RFP(초안) 공고가 되는 경우, 기지원 비용 전액 환수조치 예정

** PQ 통과후 입찰참여 여부 검토를 위한 F/S 지원은 가능하나, F/S 실시기간 중 입찰이 공고되지 않아야합니다.

[5] 동일사업으로 수은과 타 기관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?

- 타 기관에서 **예비타당성조사를 지원받은 후 당행에 본타당성조사로 지원신청**하거나, **과업 범위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**합니다. 다만, 타 기관에서 기지원한 사업의 경우, 해당 과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일정 수준 이상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며, 당행 앞 **지원신청서 접수 시, 기 완료된 용역보고서를 함께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- 동일사업으로 당행과 타 기관에 모두 지원신청하고 **양 기관에서 동시에 선정되는 경우**에는 중복수혜 방지에 따라 **사업선정이 취소**됩니다. 당행의 선정 사업목록은 KIND, 해건협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할 계획입니다. 수은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받은 후,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 지원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,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방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6] 과거 지원 신청하였으나, 선정에 탈락한 사업을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?

- **여러 번 지원 신청하는 것도 가능**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- 또한, 동일사업에 대하여 **과거 특정 과업으로 지원받은 후, 다른 과업으로 다시 지원신청 하는 것도 가능**합니다 (예 : 법률 분야로 지원받은 후, 재무분야로 재신청)
  다만 이러한 경우, 사업선정위원회 심사에서 수혜기업 간 형평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[7] 동일 발주처의 동일/유사한 다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까?

- **동일 발주처**의 사업구조가 **동일 또는 유사한 다수의 사업**이 있는 경우, **각각 또는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신청이 모두 가능**합니다. 복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함에 따른 별도 우대사항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.

[8] 수은과 해외사업개발 자문계약 체결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까?

- 해당사업으로 **자문계약 체결을 완료**한 경우, 이해상충문제로 인해 사업타당성조사 **지원이 어렵습니다**. 다만,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사업으로 **최종 선정된 이후, 해당사업에 대해 당행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**합니다.

[9] 성공불 조건 관련, SPC가 비용을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까? 향후 수주 실패에 따른 불이익 또는 제약사항이 있습니까?

- 신청인이 포함된 **SPC가 비용을 반환하는 것도 가능**합니다.
- 성공불 조건은 향후 사업 수주 성공시 수은으로부터 지원받은 용역비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**수주 실패에 따른 불이익 및 제약사항은 없습니다**.

[10]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비용의 경우, 지원한도가 있습니까? 비용 분담 시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까?

- 개별 건에 대한 명시적 지원한도는 없으나, ① 대상사업 총사업비 대비 지원신청금액, ② 당행 연간지원규모 대비 지원신청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* 금액 조정 필요 시, 최종 지원사업 선정 전 사업주와의 협의 예정

- **지원신청금액**은 **실제 사업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금액만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기재**하시기 바랍니다. (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음)

  사업타당성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신청 하시기 바라며, 사업주 출장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
- 또한,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한 **비용 분담**은 **현금분담**으로 한정합니다.
- 한편, 비용분담과 무관한 과업 범위에 대하여 사업주가 현물출자 형태로 직접 역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며, 용역 발주시에는 해당 과업내용(사업주 역무)을 분리하여 발주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행에서 발주한 용역의 과업은 물론 사업주 역무로 수행한 과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[11] 사업제안서 작성 시, 유의사항은?

- 사업제안서는 사업공모 시 함께 공지된 당행 사업제안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, **양식 및 구성 항목의 등**은 **변경**이 **불가**합니다.
- **명시된 항목과 관련 없는 내용***은 **작성하지 않으며**,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.

* **잘못된 사례 예시** : 해당 국가에 대한 사업경험 작성 항목에 인접 국가 사업경험을 작성

[12] 컨소시엄 구성 관련, 유의사항은?

- **컨소시엄의 구성**은 **사업평가 및 선정조건의 중요한 평가사항**으로, **컨소시엄**임을 확인할 수 있는 **근거서류(MOU, 참여의향서 등)를 반드시 제출**해야 합니다. **각 구성원의 지분율**은 향후 **승인조건으로 명시**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,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구성원 지분율에 대한 변동은 승인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당행 사업선정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**사업제안서에 컨소시엄 구성을 허위로 작성**하였거나 **타당한 사유 없이 선정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**에는 **지원사업 선정이 취소**될 수 있으며, **지원비용 전액이 환수**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동 사실은 추후 사업선정에 고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13] 자산규모 대비 사업 규모의 적정성 관련, 총자산에 대한 작성 기준은 무엇입니까?

- **총자산**은 **국내 사업주 총자산**의 **합계**를 **기준**으로 **평가**하며, 제안서에는 각 구성원의 최근 결산연도 기준의 자산규모(연결기준) 및 컨소시엄 자산의 합계를 작성합니다.

[14] 제출서류 중 유의사항은?

- **[공통]** 설계사 견적서 등 **용역비 산출 근거자료**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.

  아울러, '신청서', '사업타당성조사 상세내역서', '사업제안서' 상 용역비(총합계, 과업별 예산 등)가 용역비 산출 근거자료에 기재된 수치와 일치하도록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.

  신청기업이 작성한 예상비용은 향후 **용역 발주시 예정가격의 기준**이 되므로, **신중히 작성**하시기 바라며,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일부 감액 승인될 수 있습니다.
- **[선택] 컨소시엄 구성 확인서류**, **발주처 및 금융기관 지원의향**(서신, MOU, LoI 등) 등은 해당 시 제출하며, 동 항목에 대한 가점은 **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**에만 **인정**됩니다.
- 신청기업 제출자료에 대한 별도의 NDA(Non Disclosure Agreement) 체결은 없으며, 제출자료 일체는 사업선정위원회 당일 현장 배포 및 현장 회수하고, 외부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 관련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음으로써 대외유출에 유의하고 있습니다.
- 근거서류는 신청서 접수 마감기한 내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발주처 및 금융기관 관련서류가 현재 코로나19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, 동 서류의 경우 사업선정위원회 당일 기업PT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입니다.

[15] 국내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가점부여 사유와 기준은 무엇입니까?

- 투자개발형 사업은 기업의 출자를 전제로 하므로, 기업들의 투자여력 등을 감안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여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자본금 출자부담을 완화하여 사업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. 또한, 발주처가 요구하는 실적요건 충족이 수월하므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
- **국내기업간 컨소시엄 구성** 여부는 구성원의 **지분참여**를 **기준**으로 평가합니다. 지분참여가 없는 구성원은 컨소시엄 구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 컨소시엄간 가점은 구성 계획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우며,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됩니다.

[가점 제외]

· **자/손회사와 컨소시엄**을 **구성**한 경우
· **계열사 간 컨소시엄**을 **구성**한 경우
· **단순 가점**을 **목적**으로 임의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[16] 선호되는 사업국이 있습니까?

- **특정 선호 국가는 없습니다.** 사업선정은 사업성(Feasibility), 금융조달가능성(Bankability),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합니다. 다만, 국가리스크는 사업평가항목의 하나로서 평가됩니다.

[17] 발주처 및 금융기관 지원의향 표명에 대한 가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?

- **[발주처 지원의향 표명] 사업주와 발주처 간 직접 체결한 MOU, 발주처가 사업주 앞 직접 송부한 서신** 등 당사자 간 지원의향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되며, 양국 정부간 MOU 등은 가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  또한, 근거서류 내용상 발주처의 참여 또는 추진의향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의사교환 수준의 MOU 또는 서신에 대해서는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- **[금융기관 지원의향 표명] 공적수출신용기관(ECA), 다자개발은행(MDB), 국제상업은행(IB)**으로부터 **LoI를 발급받은 사업**을 **대상**으로 합니다. 단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KIND, 산업은행 등 국내기관에서 발급한 LoI는 제외됩니다.

[18] 국내 정부 부처와 협력(워킹그룹 등)사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습니까?

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의 가점 또는 우대사항은 없으며, 관련 내용은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,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부문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[19] 사업선정위원회의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?

■ 사업선정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8~10인으로 구성됩니다.
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사업 분야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, 내부위원은 행내 유관부서의 팀장급 이상 직원, 외부위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습니다.

[20] 신청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은?

■ **[신청접수] 지원신청은 이메일(fs@koreaexim.go.kr) 접수**하되, **일부 서류**는 **제본하여 별도 제출**합니다.

별도 제본하여 하드카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· **대상 서류 : 사업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, 사업선정 당일 사용할 발표(PT) 자료 10부**
※ 재무제표가 DART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재무제표 하드카피는 제출 불요

· **제출 시기**
- 신청접수 마감 전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

■ **[접수 마감]**
· **이메일 : 접수 마감일 오후 6시**
· **하드카피 :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당행 도착** (우편, 퀵 배달 또는 직접방문 가능)

[21] 선정결과 안내 및 개별 신청자앞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?

■ 선정결과는 **당행 홈페이지에 접수번호 및 사업명을 공고**합니다.

■ 지원사업으로 **선정된 기업 앞**으로는 '사업타당성조사 지원내용 및 선정조건',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**선정 통지서**를 **별도** 송부 합니다.

■ 지원내용에는 지원항목, 지원금액, 분담비율이 포함되며, **선정조건**에는 사업제안서 작성 시 기재한 **컨소시엄 구성 내용**, **국내기업 지분율**, 국내기업 **최대주주 지분율**이 포함됩니다.

■ 사업선정과정에서 신청기업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, 또는 향후 타당한 이유 없이 선정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행의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당행에서 기지원한 용역비용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, 유의 바랍니다.

[22] 사업 선정 이후 용역발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?

- 사업 선정 후 사업주는 용역관리담당부서(기술환경심의부) 앞 선정된 사업의 입찰공고에 필요한 용역 세부 과업범위, 예상 분야별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, 예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 관련자료를 당행 앞 제출하고 입찰공고 전 사전협의를 실시합니다.

- 당행은 제출된 자료 및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요청서(RFP) 등 입찰공고 내용을 확정하며, 국가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을 진행합니다.

- 당행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용역 발주 및 입찰을 진행하며, 일반적인 용역입찰 단계별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- 사업주 협의 및 RFP 작성 : 1~2개월
  - 입찰공고 : 45일(사전규격공고 5일 포함)
  - 입찰평가 : 약 2주
  - 계약협상 : 약 2주

[23] 용역 기간 및 용역비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?

- 용역 기간과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, 연내 용역 완료 또는 연내 용역 예산 소진 등의 제한사항은 없으며, **용역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**.

[24] 용역보고서는 향후 공개되나요?

- 용역보고서는 당행의 자금이 투입된 지적자산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, 타당성조사 완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기업에 의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보고서가 열람신청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. 공개방식 및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당행과의 열람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[25] 사업주가 용역 품질관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용역 품질관리를 위하여 용역 착수 전 당행과 사업주가 참여하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, 사업운영위원회는 착수,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단계별 보고서와 주요 사항의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.
- 사업주 위원은 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3인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,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시 용역수행사의 과업성과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, 성과물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그밖에도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수시 용역 공정점검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[26] 용역 발주주체는 누구이며, 신청기업에 의한 용역발주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?

- 용역 발주는 당행 직접발주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사업주에 의한 용역 발주는, 신청기업이 용역비용의 과반 이상을 분담하는 경우, 외국기업의 용역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- 사업주가 용역을 직접 발주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의 구성, 평가기준 등은 당행 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.

[27] 신청기업이 F/S 용역수행사로 참여 가능한가요?

- **신청기업(컨소시엄 참가사 포함)은 용역수행업체로 참여 불가**합니다.